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26 ~ '30]

2025. 12. 30.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I. 기본계획 개요	1
II. 현황 및 여건	3
1. 야생생물 보호·관리 현황	3
2. 그간 성과 및 개선점	7
3. 국내·외 여건	12
4. 현황 및 여건에 따른 시사점	18
III. 제5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9
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9
2. 제4차 계획과의 비교	20
3. 추진전략별 주요 성과지표	21

IV.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22

1.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22

2. 야생생물 보호와 보전·복원 30

3.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46

4.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개선 60

V. 부록 67

1. 세부 추진과제별 관계부처 및 소관기관 67

2. 세부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68

I. 기본계획 개요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목적 및 수립주기

- 목적 :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
- 수립주기 : 5년

* (1차) 2005~2010, (2차) 2011~2015, (3차) 2016~2020, (4차) 2021~2025

□ 주요내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연구
-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전 정책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
 - 보전·복원 및 증식, 보호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산정 및 재원 조달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
- 불법포획 방지, 구조·치료,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수렵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

□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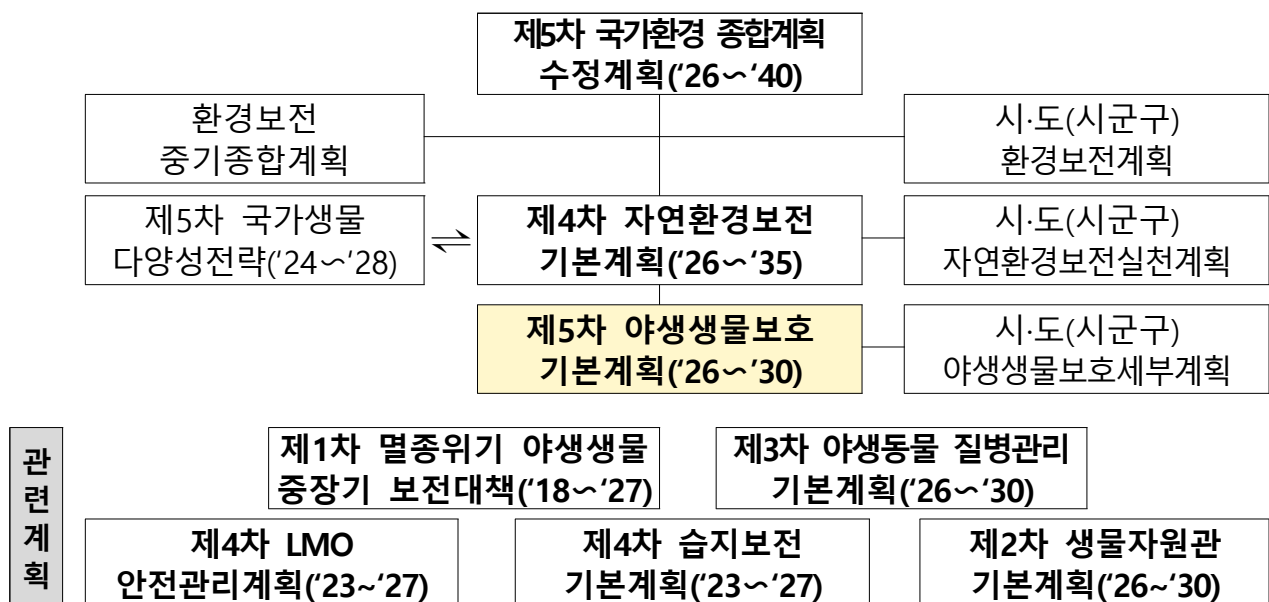
○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 야생생물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보호의 기본 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지침 제시
- 야생생물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NGO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 상위계획의 야생생물 보호 정책에 대한 실천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 연계된 중기 계획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이행과제 중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전 대책을 구체화
-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 정비, 조직, 예산, 세부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체계도>



Ⅱ. 현황 및 여건

1 야생생물 보호 · 관리 현황

1-1 야생생물의 현황과 특성

□ 야생생물 현황

- (전세계) '24년 기준 약 13백만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IUCN 등), 이 가운데 분류학적으로 확인한 생물종 수는 약 218만종*

* '24년 세계통합분류학정보시스템(Catalogue of Life)

- (우리나라) 국내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은 '25년 기준 62,604종이며, 이 가운데 한반도 고유종*은 2,158종(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

*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

- 동물계 34,875종, 식물계 8,320종, 균계 6,612종, 유색조식물계 3,372종, 원생동물계 3,017종, 세균계 6,351종, 고세균계 57종



< '25년 기준 국내 생물종 현황(국립생물자원관) >

□ 국내 환경 및 야생생물의 특성

- 특색 있는 기후와 지형으로 인해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중
 - (기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
 - (지형) 전 국토 약 70%가 산지이며, 내륙과 해안 주변으로 습지·갯벌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다수의 섬 위치
- 다만 최근에는 외래종 유입, 기후변화, 교통 발달 및 야외 레저생활 증가 등에 의해 야생생물 서식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위협

1-2

국내 야생생물 보호·관리체계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종 지정·관리

- 국가보호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국가유산청), 희귀·특산식물(산림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 : CITES* 협약에 따라 수출·입 등을 관리하는 종
-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중에 대해 수출·입 규제
- 유입주의 생물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 생태계교란생물 :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 백색목록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환경영향 및 안전성이 확인되어 수입·유통 등을 관리하는 종('25.12 시행)

*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 포획·채취 금지 야생동물 : 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의 포획 금지
-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이 가능한 야생생물 지정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해 국외 반출 규제
- 유해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 야생동물의 식용 규제
- 시·도보호 야생생물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을 지정

□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관리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국가 지정
 -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자체 지정
 - 습지보호지역 :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
 - 특정도서 :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서
 - 자연공원* : 자연생태 및 경관 보전상태가 우수한 지역 지정·보호
- * 국립공원, 도립·광역시립공원, 군립·시립·구립공원, 지질공원

□ 야생동물의 질병·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질병 및 구조·치료 관리

- 야생동물 질병 연구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총괄 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정
-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운영

□ 안전한 야생동물 수렵 문화 조성을 위한 수렵 관리

- 수렵동물 지정 및 수렵장 설정
- 수렵 강습 및 수렵면허 발급 관리

< 우리나라의 야생생물 보호·관리 현황 ('25.12 기준) >

생물종 62,604종, 고유종 : 2,158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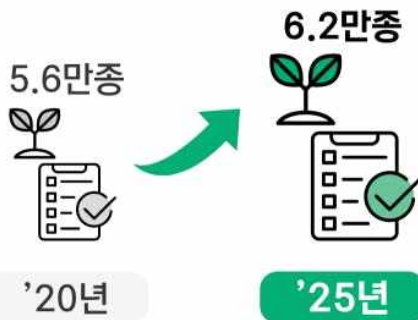
항 목			2020년	2025년	변화량
생물종 지정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282종	+15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35,801종	40,920종	+5,119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9,390종	10,681종	+1,291종
		백색목록	-	888종	+888종
		포획금지 야생동물	478종	471종	-7종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5,814종	5,814종	-
	관리	유입주의 생물	301종	1,005종	+704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종	4종	+3종
		생태계교란생물	1속 33종	1속 39종	+6종
		유해야생동물	17종	19종	+2종

보호 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개소 (26.20km ²)	1개소 (26.20km ²)	-
	야생생물 보호구역	394개소 (909.43km ²)	399개소 (910.76km ²)	+5개소 (+1.33km ²)
	습지 보호지역	46개소 (1558.13km ²)	57개소 (1750.96km ²)	+11개소 (△192.83km ²)
	특정도서	257개소 (13.79km ²)	260개소 (13.84km ²)	+3개소 (+0.05km ²)
	자연공원	92개소 (21,261 km ²)	97개소 (22,888km ²)	+5개소 (+1,627km ²)

2 그간 성과 및 개선점

2-1 제4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

자생생물종 목록화



주요 야생동물 질병 예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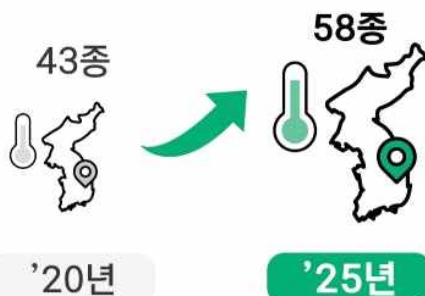
보호지역 확대(KD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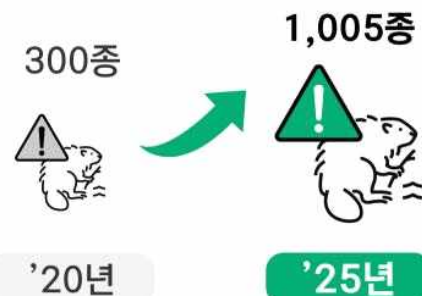
생태축 단절구간 연결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분포변화 예측



유입주의 생물 지정



1 야생생물 보호·복원 강화

□ 주요성과

- (빅데이터 확보) KTSN* 기반 생태조사자료 DB 구축 및 개방·공유 확대,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에 의한 생태 빅데이터 3.9백만 건 확보

* 한국종목록연번체계, Korea Taxonomic Serial Number : 우리나라 관리 종에 고유 식별번호 부여

- (자생생물 발굴) 생물자원 조사 및 연구 확대로 국내 총 62,604종의 생물 서식 확인('25.12 기준)

- (멸종위기종 보호)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확대('17년 267종→ '22년 282종)

- 생물종 동정 전문인력의 세관 파견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관리 강화('21~), 시설** 개소를 통한 보호체계 마련('21.6)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 : ① 유가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24.4~), ② CITES 보호시설('21.6~)

- (질병 관리) 주요 야생동물 40종('25) 예찰 등 사전 관리 강화,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개원('20.9), 파충류 검역 시행('24.5) 등 질병 대응체계 마련

- (사고예방 및 구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확충(16→17개소, '24년),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피해 저감 의무화(야생생물법 시행, '23.6~)

□ 개선점

- IUCN 녹색지위*(Green status) 도입 검토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사업의 성과 평가체계 마련 필요

* IUCN의 보전평가시스템으로, 종 보전 노력의 효과와 종의 회복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후, 질병 예찰, 발생 대응, 사후 조치 등 질병 관리체계 다각화·고도화 필요

②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복원 강화

□ 주요성과

- (보호지역 확대) '25년 육상 보호지역 18.2%*로 목표('24년 17.7% 이상) 달성, 국제 기준에 맞게 보호지역 분류 조정 및 WDPA(세계보호지역DB) 등재
- (보호지역 관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대상 관리 효과성 평가(MEE*) 19개소 추가 시행

* MEE,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 국제적인 보호지역 관리 평가 표준 방법론

- (복원체계 확립) 제2차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계획('19~'23) 추진 완료, 제3차 계획('24~'28)에 따라 생태통로 40개소, 폐도 4개소 복원 추진중
- (생태축 연결) 도시생태축 복원('20년 2개소→'25년 33개소), 전체 생태축 단절구간 연결 확대('20년 46개→'23년 81개) 등 생태계 연결성·건강성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요인 및 야생생물 관측 항목 확대('24년 28개), 생물다양성 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항목*·지표** 신규 개발

* (항목) ①기후변화에 의한 식물 변동, ②외래식물 증가, ③국가보호식물 감소 등 3개

** (지표) 연평균 기온변동률, 서식가능 식물종수 변동률, 외래종 증가율 등 30개

- (취약종 보호) 기후변화 심화로 폭설 등 이상 기상 현상 반복 전망, 극한(劇寒) 기후에 취약*한 산양의 피해 저감을 위한 보호 대책 강화

* 폭설, 급격한 기후변화 등을 산양의 주요 감소 원인으로 지적(IUCN)

※ 지역협력기반 예방조치 강화, 체계적 구호, 구조 후 생존율 향상, 서식권 이동 향상 등

□ 개선점

-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보호지역 확대 및 국제목표* 달성 필요

* CBD KM-GBF(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근거, '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국토의 30%로 확대 필요

- 기후변화에서 나아가 전지구에 도래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지표종의 미래 변화 예측 등 대응 기반 강화 필요

③ 유입·유해 야생생물 관리 강화

□ 주요성과

- (전과정 관리) 야생동물의 수·출입, 개인소유 제한 등 전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및 백색목록 제도 마련('25.12~ 시행)
※ 기존 법정관리종 외 모든 야생생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 금지하되, 생태계·국민건강 안전성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허용(신고 必)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국내 유입시 생태계 위해가 우려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20년 301종→'25년 1,005종) 국내 생태계 보호 강화
- (외래생물 예찰) 주요유입·이동경로(항만,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예찰지를 26개소 운영하여 위협요인 조기 발견·대응
- (LMO* 모니터링) 국내 유통중인 LMO의 자연생태계 내 유출 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로 생태계 안전성 강화('24년 1,100개소→'25년 1,150개소)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변형생물체
- (LMO 위해성 평가) 수입·생산·이용 신규 LMO의 위해성 심사를 위한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5.7)
※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운영되던 위원회의 구성·기능·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 (유해야생동물 지정) 무분별한 섭식으로 생태계 파괴, 질병 전파, 재산 피해 등을 유발하는 꽃사슴*(외래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25.12)
* '50년대부터 사육용으로 일본·대만에서 수입, 유기·방치되어 농작물 및 생태계 파괴

□ 개선점

- 백색목록 제도 시행 이후, △홍보, △영업자·지자체 교육, △안내서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제도 안착 추진 필요
- 기후변화와 팬데믹으로 생물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 강화 등 생물안보 체계 강화 필요

4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강화

□ 주요성과

- (민원시스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야생동물 허가·신고 등 전자화 체계 구축으로 민원인 편의 증대('23.12~, 6개 법정관리종 대상)
- (법·제도 정비)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시행
 - (동물원 허가제) 동물서식환경, 전문인력 등 구체적 허가요건을 제시한 동물원 허가제 도입으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23.12~, 동물원법)
 - (영업 허가제) 야생동물 수입·생산·판매·위탁 등 영업 허가제 도입, 영업자 교육 실시 등 전과정 관리 강화('25.12~, 야생생물법*)
 - * 전과정 관리제도 개선 목적으로 백색목록 등 수입·유통 관리 강화와 함께 시행
 - (곰사육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육 종식을 위한 보호시설 개소('25.9, 구례) 등 사육 금지 시행 대비('26.1.1~ 야생생물법)
- (부처간 협업) 국가보호종 실무협의회(연 2회) 개최를 통한 부처별 (기후부·해수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 협업 강화 및 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곤충 대발생 대응) 지자체, 유관기관(자원관, 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협력을 통한 도심지역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친환경 방제조치를 통한 생태계 영향 최소화
- (국제협력) CBD GBF 및 이행지표 결정을 위한 당사국총회(1회/연) 등 국제사회 논의 참여, 국내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행

□ 개선점

- 정부기관간 협력에서 나아가, 민간단체·시민 대상 교육·홍보 확대로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전국민 인식 제고 필요
- 폭넓은 범위의 정책 수립과정에 시민 및 준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3 국내·외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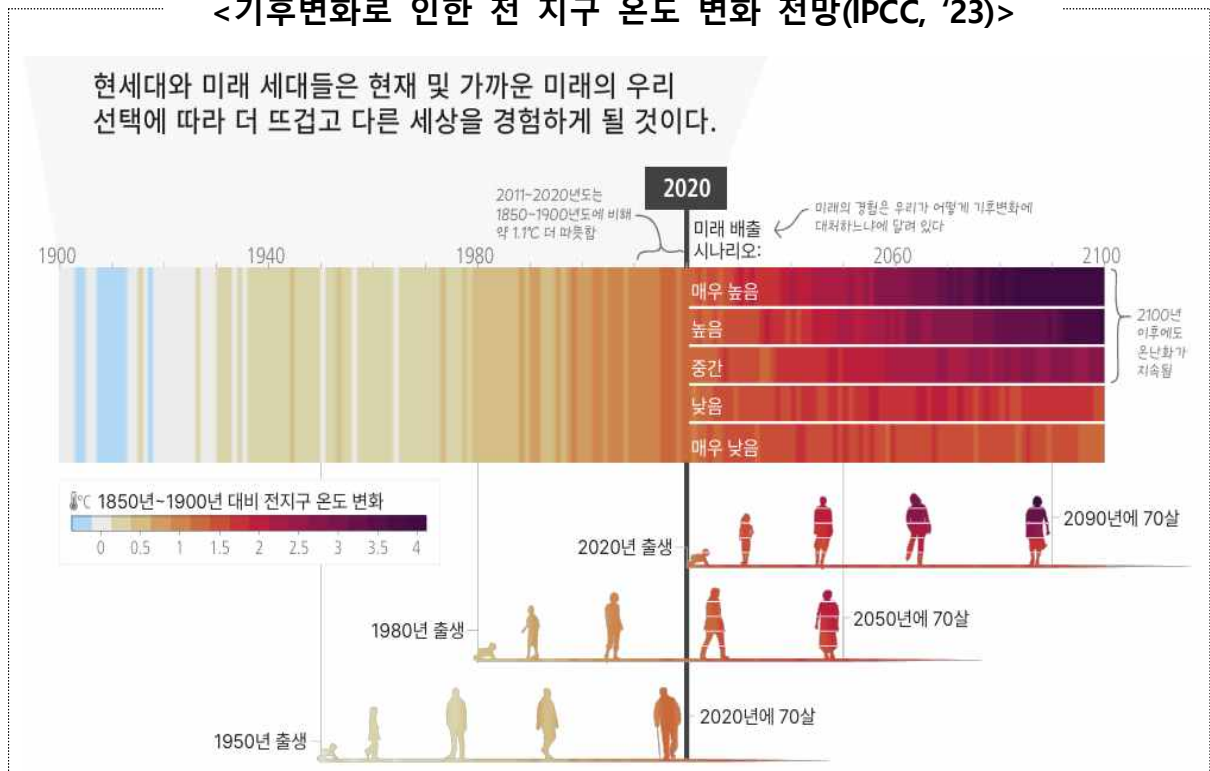
3-1 국제적 여건

□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확산

- 화석연료 사용, 토지이용 및 생활양식·패턴 변화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온난화 가속화
-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지구 연평균 온도 1.55℃ 상승(24, WMO),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야생생물 종과 생태계에도 위기 유발
- 여러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 NDC*에 따르면 210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3℃ 상승 전망(23, IPCC)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별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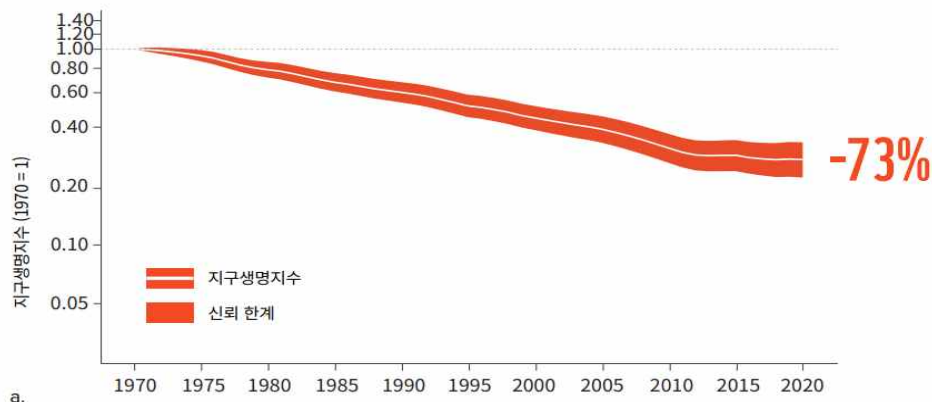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 온도 변화 전망(IPCC, '23)>



□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인

- 전 지구적인 극한기후 증가로, 대기·해양·육지 전반에서 대규모 생물 이동·폐사 등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 발생
-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73% 감소 등(WWF, '24)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결과 가시화
 - 세기말까지 현재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지구 생물다양성에 치명적 결과 초래 우려

< 글로벌 지구생명지수 : 1970년 이후 척추동물 종 수 변화양상(WWF '24) >



※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 : 전 세계의 척추동물 종 개체군의 추세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 생태계 회복탄력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 가치 저하

- 폭풍·가뭄·홍수 발생 증가 등 기온과 수온의 변화, 계절적 변동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자연재해 방지 기능 저하
-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산호초 백화 현상 반복으로 전체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 및 어업량 감소
- 산림파괴, 황폐화, 교란으로 인한 숲 회복 탄력성 약화로 가뭄, 산불, 식물 고사 증가

□ 기후위기 외에도 생태계와 야생생물에 대한 다양한 위협 증대

◇ 유엔환경계획(UNEP)은 야생생물의 주요 생존 위협 원인으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침입종, 환경오염, 과도한 자원 이용 등 제시(BGO5, '20)

- (서식지 파괴) 인간활동으로 인한 야생생물 서식지 손실·훼손
 -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숲은 1990년 이후 약 4억2천만ha가 사라졌으며 서식지 소멸은 멸종위기종 발생 주요 요인의 85% 이상 차지(IPBES, '23)
 - 약 12%의 수목 생존이 벌목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수렵은 1,341종의 야생 포유류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확인(IPBES, '22)
- (외래종 침입) 외래종 증가 및 질병유입으로 인한 고유종 생존 위협
 - 전 세계적으로 37,000종 이상의 외래종이 다양한 인간 활동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야생생물 멸종에 60% 기여(IPBES, '23)
 - 유입된 생물종을 통한 새로운 질병 확산으로 인해 질병 취약성 증가
- (환경오염)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사용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위협
 -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포함한 오염은 생태계 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담수 및 해양 서식지에 치명적인 직접적 영향
 - 살충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식물과 곤충 개체수가 감소하며, 대기·토양 오염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또한 증가

□ 전지구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지속

- CBD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목표 설정
 - 기존 아이치 목표를 대체하며 2030년까지 4대 장기목표*와 23개 세부목표로 구성
 - * ①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②지속가능한 이용, ③유전자원 이익 공유, ④목표 이행과 주류화
- 각국은 GBF를 자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 필요

< 야생생물 관련 GBF 주요 세부목표 및 국내 정책 연계성 >

GBF목표	주요 내용	국내 정책 연계 가능성
목표 2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목표 3	육상·해양의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	보호지역 확대 및 질적 관리 고도화
목표 4	모든 야생종 보전 및 유전적 다양성 유지	종 복원 성과 기반 정책 추진
목표 6	침입외래종 유입·정착·확산 50% 이상 감소	외래생물 사전 차단, 관리기준 강화

○ IUCN의 표준화된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멸종위기종 보전

- 「IUCN 적색목록(Red List*)」 운영을 통해 CBD, CITES 등 국제 보전정책의 기준으로 활용

* 지구상 생물종의 멸종위험을 등급에 따라 평가하여 분류한 목록

- 종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도구로 **GSAP SKILLS*** 플랫폼 구축

* GSAP(Global Species Action Plan)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종 보전 전문가간 협업을 촉진하고 교육 콘텐츠, 기술 문서 등을 통해 실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식공유 플랫폼

- 최근에는 종의 복원 가능성과 성과를 반영하는 **Green Status of Species**(녹색지위) 지표*가 도입되어 복원 평가체계 전환 추진

* 종의 회복 상태(종의 보전성과, 회복정도, 미래전망 등)를 평가하는 지표

○ CITES 및 CMS 등 국제협약을 통한 국제적 노력 병행

- CITES 협약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 규제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 추진

- CMS(이동성 야생생물 보호협약)을 통해 철새, 해양포유류 등 국경을 넘는 이동 종의 보호와 서식지 연결성 확보

○ EAAFP를 통한 철새 보호 강화

- EAAFP* 회의('23, '25)를 통해 철새 도래지 보호, 불법 포획 대응, 공동 모니터링 등 실행

*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1 환경적 여건

□ 기후위기에 따른 한반도 생태계와 야생생물 양상 변화

- (기후위기) 급격한 한반도 기온 및 수온 상승 영향 가시화
 -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023년 13.7℃, 2024년 14.5℃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으며,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난화가 강화되는 추세
 - 한반도 주변 해양 표층 수온은 전 지구 대비 2배 상승하였으며 최근 14년간(2011~2024년) 고·저수온에 의한 수산업 피해 급증
- (야생생물 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와 야생생물 변화 확인
 - 일부 식물 종의 개화 정도와 시기 변화, 취약지역 고사 등 발생
 - 국내 육상 조류 점유율 감소, 아열대 어류 북상, 어획량 감소, 일부 곤충류 대발생, 질병 매개체 곤충의 증가 발생

□ 생물안보 위협 및 서식지 감소 등 생물다양성 영향요인 악화

- (생물안보 위협) 국가 간 무역 증가, 코로나19 종식 후 해외여행 증가, 개인 사육용 야생생물 수입 증가에 따른 생물안보 위협
 - 국내 생태계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이 55종('15년)에서 1,005종('25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5배 이상 증가
 - 우리나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교란생물은 3종('98년) 지정 이후 현재 1속 39종('25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리나라를 외래종에 의한 생물다양성 위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UNEP GEO-6 '19)

- (서식지 감소)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야생생물 서식지 감소와 파편화
 -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 대비 도시의 면적은 16.5%('24년)에 달하며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국토교통부, '25 도시계획 현황)
 - 전국 도로는 '20년 대비 '24년 2.6%p가 증가한 총 연장 116,011km(국토교통부, '25 도로 현황 총괄표)
 -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인 산림과 농지 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각각 우리나라 국토의 58%, 17.6%를 차지('23년 기준)
- ※ (산림) '18년 59.3% 대비 0.8%p 감소, (농지) '18년 18% 대비 0.4%p 감소

2 사회적 여건

□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 인식 증가 대비 낮은 만족도

- '21년부터 '24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는 39.8% → 68.2%,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도는 67.5% → 75.9%로 증가
- 반면 '21년부터 '24년까지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40.3%~48.3% 범위로 부정적
- ※ '24년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한국환경연구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질병, 기후변화 관련 사회 현안 증가

- '20년부터 '24년까지 야생생물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 건수는 연간 2,288건 → 3,609건으로 증가(5년간 약 15,000건)
- 그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언급이 5년간 총 8,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 필요성과 정책 대응 현황 지적
- AI·ASF·코로나-19 등 야생동물 질병 관련 언급은 5년간 총 756건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 및 모니터링·방역 대응 관련 이슈 증가
- 야생생물·기후변화가 함께 언급된 경우는 5년간 730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위협 및 서식지 변화 문제와 맞물려 주요 보도

4 현황 및 여건에 따른 시사점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야생생물 보호 정책 강화 필요

- 야생생물과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예측, 종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로 기후위기 대응 및 야생생물 보호 기반 강화
-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외래생물, 감염병 등에 대한 사전 감시와 발생 시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 CBD GBF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확대 추진 필요

- 2030년까지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해 보호지역을 국토의 30%로 확대하여 GBF의 '30 by 30' 목표 달성 필요
- 단순 면적 확대 뿐 아니라 생태적 대표성, 연결성, 질적 기준 등을 고려하고, 민간·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지역 확장 노력 필요

□ 생물다양성 증진과 서식지 보호의 실질적 성과 창출 노력 필요

- 종 복원 정도와 성과를 정량화하는 지표의 도입·적용을 검토하는 등 단순 보전에서 이행 기반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백두대간, 도서·연안 등 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에 대한 보호와 단절된 생태축 복원의 지속적인 노력 요구

□ 야생생물 위협요인 저감 및 생물안보 강화 필요

- 기후변화와 팬데믹으로 외부 위협이 증가하고 GBF에서도 침입외래종 감소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유입 사전 차단 등 생물안보 강화 필요
- 생물안보를 위해 야생동물 수입·유통 등 전과정 관리 목적으로 신규 도입된 지정관리 야생동물 및 백색목록 제도의 안착 필요

Ⅲ. 제5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기후위기를 극복한 생명력 넘치는 한반도

목표

야생생물과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관리체계 강화

추진 전략

①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 기후위기 취약 야생생물 보호 강화
-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복원체계 강화
-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② 야생생물 보호와 보전·복원

- 야생생물 조사 개선 및 활용 확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강화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체계 강화

③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 기후위기 대응 질병관리 체계 다각화
-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이행 강화
-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 관리 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
-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④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개선

-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 및 시설 개선
- 야생생물 보호 협력 및 인식 확산

구분	4차 계획	5차 계획
대책 성격	- 야생생물 위협요인을 저감하는 보호·관리 체계 정착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20.9) 및 야생동물 매개 신·변종 감염병 출현증가 경향 등 반영	- 기후위기 대응 및 외래생물 등에 대한 생물안보 강화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야생생물 보호, 유입주의, 외래종 관련 생물안보, 보호지역 확대 등 반영
주요 추진 과제	- 야생생물 조사 방법 표준화·DB 구축 등 활용성 제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보호지역과 연계를 통한 보전 -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계획에 따라 보전·복원 사업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곤충 대발생 대응 등 - 야생동물 질병 감시체계 구축 등 질병 관리 체계화 - 조류충돌, 찢길사고 등 야생동물 사고예방, 구조·치료 체계 강화 -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등 외래생물 관리 확대 -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기반 마련 「야생생물법」 개정 등 야생생물 보호 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 - 야생생물 관련 국민 인식제고 등 교육·홍보 강화	- 기후대응을 위한 고정조사구 확대,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강)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과학화, 및 서식지 보호와 개선(강) - 한반도 핵심 생태축 단절구간 보전과 복원사업 지속 추진(강)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대응 마련 및 곤충 대발생 대응 고도화(강) - 야생동물 질병 사전 예방,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및 체계 마련(강) - 야생동물 사고예방 제도 개선 및 구조·치료 역량 강화(강) - 외래생물 유입 차단과 함께 정착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강) - 백색목록 적용, 교육 및 인식 확산 등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강) 「생물다양성법」 개정 등 보호지역 관리 제도 개선(강) - 야생생물 보호 민간 협력 강화 및 보전인식 확산(강)

3 추진전략별 주요 성과지표

①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시설 확대		'25년 3개소 → '29년 8개소(누적)
자연공존지역·법정보호지역 등 육상 보호지역 확대		'25년 18.2% → '30년 30%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6년(자연환경보전법 개정)
② 야생생물 보호와 보전·복원		
국가생물종목록 확대		'25년 62,604종 → '30년 68,000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지정·관리를 위한 법 개정		'26년(야생생물법 개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자관리체계 고도화		~'30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추가 설립		'24년 17개소 → '29년 19개소(누적)
③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질병 관리 등급 지정		~'30년
백색목록위원회 개최		연 1회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25년 1,005종 → '30년 1,250종(누적)
전국 자연생태계 LMO 유출 실태조사 대상지점 확대		'25년 1,150지점 → '29년 1,250지점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심 출몰 야생동물 종합 관리방안 마련		'26년
④ 야생생물 보호·관리기반 개선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및 가치 증진을 위한 민간참여 규정 마련		'26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문가와 함께하는 섬생물탐사단 운영		'26년~, 2회/연

IV.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1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1-1 기후위기 취약 야생생물 보호 기반 강화

- ◆ (목표) 기후위기 취약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 (성과지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대상 확대('30년 83종 누적, 5종/연),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시설 확대('25년 3개소 → '29년 8개소)(누적)

□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 관련 야생생물 장기 모니터링* 체계화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와 생물다양성 영향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평가 필요
 - * 장기생태연구(국립생태원), 기후변화 생태계 모니터링(국립공원),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국립생물자원관) 등 기후변화 관련 조사 진행중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생물종 미래 분포 등 장기적 변화 파악 필요
 - 도서·연안과 같은 취약 지점의 모니터링 고도화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시계열 변화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인력 의존 체계에서 벗어난 자동화 기반의 자료 수집 필요
 - 대발생 곤충, 벌·나비 등 화분매개곤충, 한반도 고유 침엽수인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야생생물 종·생태계 연구 확대 필요
- ☞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확대,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기반 강화, 기후변화 취약 종·생태계 연구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추진

□ 세부과제

① 기후변화의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영향 모니터링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확대로 종별 미래 분포 등 생물학적 변화를 파악하고 한반도 생물다양성 영향 예측('25년 58종 → '30년 83종, 누적)
- 3개 자원관 주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 연계성 강화 및 모니터링 추진('26~)
- * Korea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 생물다양성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수집·공유하는 국가 차원의 관측 네트워크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멸종위기종, 고유종 등 주요 종의 서식계절 변화, 지리적 분포 변화 등 중장기적 비교 데이터 확보(지속)
- 도서·연안의 권역별 특성, 생물다양성 우수정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장기 모니터링 대상지('30년 3개 이상) 선정 및 모니터링(연 2회 이상) 추진('26~)

②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기반 강화

- 지역 생물다양성 현황,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생물다양성 평가도구 고도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취약성 평가 지원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항목 개발 및 도구 고도화(VESBID)('26~'29), 생물다양성 부문 분류군별 항목·지표 탑재(VESTAP)('27~'29)
- 생태계 연속적 시계열 자료 수집 등 장기적 표준 생태정보 수집
 - 생태계 유형별(산림, 도시, 습지)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설치하여 연속적 시계열 변화 자료수집(생물계절*, 미기상, 탄소순환) 및 비교·분석
 - * (생물계절) 개화, 개엽, 낙엽, 산란, 우화 등의 시기 변동 / (미기상) 온습도, 강우량, 일사량, 풍속 등 / (탄소순환) 생태계 탄소흡수량, 토양호흡량, 바이오매스 증가량 등
 - 생태계 표준관측망 지점을 3개소('25년)에서 8개소('29년)로 확대*
 - * ('25년) 남산·점봉산·서천, ('26년) +제주도·계룡산, ('29년) +우포늪·완도·무등산

- 기후변화 시나리오(SSP*) 기반으로 전국 담수생물의 종 분포 및 서식지 축소 정도 등 담수생물 미래 변화 예측('26~'28)
 -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기존의 RCP 시나리오 개념과 함께 인구 수, 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한 시나리오
- 기후변화 취약 담수생물종 목록을 도출하여 우선 관리 대상 종 제시
- 도서·연안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와 대응을 위한 도서·연안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영향 예측 모델 개발('26~)
- 지구 생물다양성 관측네트워크(GEO-BON) 연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심포지움 개최('26~'29), 생물다양성 기후영향 보고서 발간('30)

3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보호·대응 기반 마련

- 기후·환경변화에 의한 대발생 곤충 종의 생태정보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26~'30)
- 국내 주요 화분매개곤충의 인벤토리(200종)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변화 예측('30년)
- 고산 취약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구상나무 염색체별 선별 유전자(4,000개) 및 유용 유전자(20개) 확보, 유전자 해독 연구 추진('29년)
 - ※ 고산 침엽수림 집단고사, 쇠퇴 현상의 직접적 원인 규명과 구상나무 전장 염기서열 해독 및 조립, 기후위기 대응 환경 적응 유용유전자 확보,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평가
- 도서·연안 야생생물의 참조유전체* 해독으로 유전체 정보 기반 유전적 다양성 평가와 유전체 취약성 연구(연/2종, '30년)
 - * 특정한 생물 종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염기서열로 유전체 분석에 기준으로 이용

- ◆ (목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확대와 안정적인 서식지 관리
- ◆ (성과지표) 자연공존지역(OECMs) 도입 등을 통한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30년), 자연공존지역의 정의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26년)

□ 현황 및 필요성

- CBD KM-GBF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관리를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국내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 필요
 - * 자연공존지역(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법적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지속적 관리 또는 토지·자원 이용 방식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지역
- 보호지역 내 인위적인 훼손 등으로 야생생물 서식지 피해 발생, 자연·생태에 기반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을 통해 서식지 보전 필요
 -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 환경오염, 자연재해, 질병,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생태계 보호·복원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조치(IUCN)
- ☞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 후속 관리 강화, 야생생물 핵심 서식지 보전 강화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 세부과제

① CBD KM-GBF 2030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 육상 보호지역 30% 지정 확대(30x30 목표 실현, '30년)
 - 자연공존지역(OECMs) 적용 가능 용도구역 조사,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자연공존지역의 정의 등 법적 근거 마련('26년)
-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보호지역 신규 지정·확대(지속)
-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정보 관리 강화(지속)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② 보호지역 후속 관리 강화로 국토 환경가치 제고

- 보호지역 대상 관리 효과성 평가(MEE) 확대 지속 추진 등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호구역 보전 강화
- 보호지역 보전 가치 평가, 보전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지속)
- 보호지역 정보시스템의 정보(지적도, 면적 등) 오류 발굴·수정 체계화 등 정보 정확도 개선(지속)
-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특별보호구역의 주민 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 서식지 보전 강화

-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한 멸종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종별 보호 체계에서 서식지도 함께 지정·보전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개정*('26년)
* (현행) 멸종위기종만 지정 ⇒ (개정) 종+서식지 지정(특정지역에만 서식하여 해당 지역 훼손 시 절멸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서식지 훼손 시 멸종 위험 급등 등)
- 야생생물 서식지의 객관적 평가기법 개발·적용으로 핵심서식지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안정성 확보('26~)
- 대체서식지 등 생태계 복원지역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보호지역 연계)
- 산불·산사태 지역 훼손지 복원으로 야생생물 서식기능 회복 추진('30년)
- 국립공원 내 생태계교란 생물(가시박 등, 50ha/연), 외래생물 관리 및 제거로 야생생물 서식지 건강성 확보('26~'30)
- 서식지 보전에 민간기업 ESG 활동 확대, 지역 중심 협의체 구성, 민·관 협의체의 전국 네트워크 확대 등 시민참여 확대('26~)

- ◆ (목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축 복원과 생태통로 단계별 관리 강화
- ◆ (성과지표)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4차, '29~'33) 수립('28),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26,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현황 및 필요성

-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보전·복원을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 선형 개발 증가로 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동물 찾길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태적 보전 및 복원 확대 필요
 - 백두대간, DMZ 일원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야생생물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한 서식지 보전 필요
 - 생태통로 설치계획 검토 등 사전관리, 설치 후 사후관리 강화로 생태통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도시 생태축을 고려한 생태계 연결성 확보, 도시 생태공간 조성 등 도시 생태축 복원 및 관리 강화 필요
- ☞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복원, DMZ 야생생물 보호, 생태통로 관리, 도시 생태축 복원 등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 연결성 강화 추진

□ 세부과제

① 백두대간지역(정맥·기맥 등) 핵심 생태축 보전 및 복원

- 복원사업의 효과 검증을 위한 다분류군(포유류·식생 등) 모니터링 방법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의 모니터링 의무기간 설정 및 성과 진단('26~)

- 관계부처 합동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4차, '29~'33) 수립('28) 등을 통한 생태축의 체계적인 연결·복원 추진
 - * 3차('24~'28년) 복원계획 : 44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생태통로 40, 폐도복원 4)
- 백두대간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 연구 및 결과를 활용한 생태축 연결성 확보방안 마련(보호구역 지정,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 등)
- 한반도 생태축 등 국가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네트워크 강화

2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

- DMZ·CCZ(민간인 통제구역) 일원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방법 다각화* 등 야생생물 서식지 현황조사 체계화('26~)
 - *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위성사진을 활용한 생태지도 제작 등
- DMZ·CCZ 내 두류미류, 버들가지류 등 주요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장기 서식 실태조사 시행(매년)

3 생태통로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강화

- 백두대간, 정맥, 기맥 등 생태축 단절 지점에 생태통로 설치 확대('24~ '28년, 40개소)
- 생태통로 설치 사전·사후 등 단계별 관리 강화(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사전) 생태통로 설치계획 협의 법제화('26)로 설치 위치·규모 등 조정
 - (사후) 생태통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생태통로 기초정보, 모니터링 결과, 개선조치 요청·이행 정보 입력 법제화('26)
- 전국 생태통로에 대한 설치·관리 실태조사('29년 600개소 누적)

□ 4 도시 생태공간 조성 등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 단절·파편화된 자연환경 및 도시생태축 연결과 복원으로 도심 내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휴식 공간 조성("26~)
 - 백두대간 및 정맥·기맥·지맥과 도시 생태거점 서식지를 네트워크화하여 생태적 연결성 및 건강성 회복 도모
 -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훼손 서식지 파악 및 복원 방안 마련
- 도시 내 자연환경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26~)
 -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도시지역 내 소규모 습지, 숲, 인공둥지 등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 지속적 확대

2 야생생물 보호와 보전 · 복원

2-1 야생생물 조사 개선 및 활용

- ◆ (목표) 야생생물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확대로 야생생물 보호 기반 강화
- ◆ (성과지표) 자생생물 발굴로 국가생물종목록 확대(30년 68,000종), 생물표본 고화질 디지털이미지 생산 확대(30년 70,000건 이상, 누적)

□ 현황 및 필요성

- 전국자연환경조사('86~),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89~),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99~) 등 야생생물 대상 32개 조사사업 진행중

< 야생생물 대상 주요 조사사업 >

기관명(조사사업 개수)	주요 조사사업
국립생물자원관(6개)	자생생물 조사발굴, 야생동물 실태조사, 철새도래실태 연구 철새 이동경로 연구,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자생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개)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담수생물 다양성조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2개)	도서·연안 자생생물 조사 발굴, 도서·연안 중심 자생생물 종발굴사업
국립생태원(17개)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DMZ 정밀조사, 하구 생태계 조사 전국 내륙습지 기초·정밀 조사, 생태경관·특정도서 정밀조사 로드킬 다발구간 정밀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국립공원공단(5개)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자연자원 모니터링, 해양생태계 조사, 국립공원 철새 이동현황 조사, 국립공원 시민과학 모니터링

- 자생생물 발굴 난이도 증가에 따른 연구방법 다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한 생물종 발굴 필요
- 원격탐사(GIS/RS), 무인기 등 야생생물 조사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비침습적 모니터링, eDNA 등 직접 조사 대비 효율적인 방법 도입 필요

< 야생생물 조사 관련 기술 및 조사방법 >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적 위치 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 RS, Remote Sensing : 항공·위성 등의 센서를 이용한 정보의 원격 수집 기술
- 비침습적 조사 : 야생생물에 접촉 등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조사 방법
- eDNA(Environmental DNA / 환경유전자분석) : 토양, 물 등에 자연적으로 떨어진 생물의 흔적을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평가, 특정 종의 서식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K-BON* 등 야생생물 조사와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지속 추진,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한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 Korea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 생물다양성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수집·공유하는 국가 차원의 관측 네트워크

☞ 야생생물 조사의 연계·활용, 조사 신기술 도입과 고도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조사 체계 개선과 활용성 제고 추진

□ 세부과제

1 야생생물 조사·연구 지속 추진

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생태원)

- 식생 794개 평가 단위, 지형 및 동·식물상 780개 도엽, 수생생물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20개 평가구역 대상 조사 추진('26~)
- 시계열 변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국자연환경조사 고정조사구 선정 방법 표준화*, 고정조사구 설치·운영(10개소, '29~)
- * 기후대, 생태계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산림습지·하구·도서·연안 등 생태계 유형별 조사 설계, 고정조사구 설치 관련 자연환경조사 지침 마련('28년)

자생생물 조사·발굴(국립생물자원관)

- 환경유전자 분석, 정밀 유전자 분석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은둔종 탐색 등 신규종 발굴(지속)
 - 자생생물 발굴 등을 통한 신종·미기록종의 국가생물종목록 등재 지속
 - * 2030년까지 국가생물종목록 68,000종 구축 목표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서식분포 확대 가능성 파악을 위한 남방계 생물종 탐색 및 지리구 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확보('26~)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낙동강생물자원관)

- 담수생물자원 신종·미기록종 발굴을 위한 조사 서식지 유형 다변화 및 현장 조사 단계적 확대*('26~)
 - * 수계(강·하천 등, 현재) → 전국 습지(고산·산간습지, 논습지 등, '26~'28), → 석회암 지형, 폐광지역 등('29~'30) 서식지 유형을 다변화
- (미생물) 맞춤형 배양기술 개발 및 최신 기술 적용으로 미확보 분류군(혐기성 원핵생물, 편모조류 희소분류군, 수생균류 등) 발굴 확대
- (동·식물) 국제협력, 미탐사 서식지 조사 등을 통한 미개척 분류군 중심 종 발굴 확대
- 국내 서식 담수생물의 실체 증거인 확증 표본과 서식지, 유전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확보('26~)

도서·연안 자생생물 조사·발굴(호남권생물자원관)

- 도서·연안 연구 확대를 통한 과학적 자료 기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 수립 지원(지속)
- 도서·연안 야생생물 분포정보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유·무인도서 100개, '30년)
 - ※ 첨단·무인 기술과 도서생물조사선(섬누리호) 활용으로 접근곤란 장소(절벽 생태계, 접근 불가 지역 등), 미조사 지역 접근성 강화
-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지속 발굴(신종, 미기록종) 및 표본확보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 기반 구축('26~)
- 도서·연안 야생생물 활용 강화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과 갱신('26~)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 생물종 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의 정량적 조사·관리 및 평가 고도화(지속)

- 인벤토리와 서식지 조사를 병행하여 국립공원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공원관리 방안 도출('30년, 24개 공원)
-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원생태계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정립(지속)
-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 참여 활성화로 자원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문가 참여형 생태계 조사단 운영으로 고용 창출 유도(지속)

야생동물 실태조사(국립생물자원관)

- 수렵동물*(16종) 및 환경지표동물**(11종)의 서식밀도 및 분포조사로 국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26~)
 - * 국가가 수렵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동물(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등)
 - ** 환경 변화에 따라 개체군의 변동 상태를 보여주는 동물(너구리, 멧토끼, 제비 등)
- 전국 17개 광역시·도(2,550개 조사구)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파악(지속) 및 인공지능기술이용 도심 출몰 멧돼지 이동경로 예측 지도 구축('24~'26)
- 산불 발생지역('25년 경상지역)의 야생동물 조사 및 개체군 변화 등 모니터링('25~'27)
- 야생동물 실태조사 연구·분석방법 및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야생동물 기초자료의 정책적 활용성 강화('26~'30년*)
 - *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 개선방안 마련('25~'26년), 시범 적용 추진('27~'30년)

조류 동시센서스 등 철새 분포 현황 조사(국립생물자원관)

- 전국 겨울철새 및 통과철새 현황 조사*로 야생동물 관리, 조류 감염병 및 철새보호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지속)
 - * 전국 겨울철새 분포 현황 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200개소, 10월~3월, 월 1회
통과철새(도요물떼새) : 20개소, 봄·가을 조사
- 철새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웹서비스(철새정보시스템) 현행화(지속)

2 야생생물 조사 연계성 강화 및 활용 확대

조사 연계성 강화

- 생물다양성 정책협의체* 운영 확대로 유관기관간 조사, 표준화 및 조사결과 공유 협력 추진('26~)
 -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기후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 야생생물 서식 현황 조사 DB의 표준화, 통합(빅데이터), 연계·분석, 디지털현지조사표(전자화 조사표) 활용 및 DB 연계 방안 마련('26~)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동으로 생물표본의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 생산·공개('26~'30, '30년 누적 70,000건)
 - ※ 생물표본 고화질 디지털이미지 표준매뉴얼 공동 제작 → 완료된 디지털 이미지와 채집지 정보 등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공개·공유
-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IBIS; Island Bioresources Total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체계적·종합적 정보 구축과 기관 간 공유·협업 강화('26~)

조사결과 활용 확대

- 도서·연안의 특성을 반영한 생물다양성 분석·평가 등 도서·연안의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 지원('26~)
- 자생생물 발굴 및 생물다양성 연구로 확보된 남방계 생물 등 신규 유입종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지원('2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유용물질로 전환(온실가스 자원화)하는 생물학적 탄소 저감 기술 개발('26~'30)
 - 자생 미생물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알코류로 전환 기술 개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가스 전처리 및 파일럿(200~500L) 현장 실증
 - ※ 자생생물 활용 CO₂저감 및 유용물질전환 기술개발 R&D 추진('26~'30, 491억)

③ 야생생물 조사 신기술 도입과 고도화

- 첨단·무인장비(3D LiDAR*, 드론, 음성녹음장치 등), 신기술(eDNA 등) 활용 확대로 무인도서·DMZ 등 접근 제한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26~)

* Light Detection Area ranging :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의 거리와 형태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원격탐지 기술

- 식생보전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판정시스템* 도입 등 판정체계의 고도화(‘29년)

* 분포 희귀성, 구성식물종의 온전성, 중요종 서식 등 표준화된 식생 평가 기준 도입

- AI 기반 이미지·음향 인식 기술을 활용한 종 식별 및 개체 수 추정(‘26~)
- 위치추적기, 전파발신기를 이용한 철새 위치 추적체계 운영(멸종위기종 등 연간 120개체 부착) 및 국내·외 철새 이동 경로 발굴(‘26~)
- 비침습적 조사 방법*을 통해 야생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조사기간 내 지속적인 장비 운영으로 조사 결과 극대화(‘26~)

* 원격탐사(GIS/RS), 무인항공기, 무인센서카메라, 송미터(야생동물 소리 녹음기) 등

④ 야생생물 조사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

-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시민 참여 활용 모니터링 지점 확대(20개소, ~’30년)
- 도서·연안 생물종 분류군별(조류·곤충·식물·해양생물 등) 시민과학자의 조사 참여를 통한 신종·미기록종 발굴 유도로 생물종목록 구축(‘26~)
- 역량 있는 시민과학자 인력 풀 확보를 통해, 관계 연구기관 간 교류 및 활용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26~)
- 시민참여자 선발·운영(90명)을 통해 시민의 생활주변 생물종 및 생활불편종 모니터링 수행 및 K-BON 주니어 운영(‘26~)
- 시민과학 중장기 로드맵 수립(‘26), 한반도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 대상종(고유종, 기후변화지표종 등) 선정 및 시민과학을 이용한 변화 관측 추진(‘27)

- ◆ (목표) 과학적 근거와 협력 기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체계 구축
- ◆ (성과지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26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생체 시료 확보('25년 2,476건 → '30년 9,976건)

□ 현황 및 필요성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에 근거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 추진
 - 멸종위협이 높은 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 대책의 기반 마련
 - ※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I 급 68종, II급 214종) 및 관찰종 56종 지정('22년)
 -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종* 25종을 선정하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대상종 연구, 복원 및 서식지 보호 진행
 - * (생태원) 소통구리저어새 등 21종, (공단) 반달산양여우 3종, (서식지외보전기관) 따오기 1종
- 기후변화에 따른 야생생물 멸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멸종위기종 현황조사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학적 수단 도입, 멸종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으로 보호종 재산정 필요
 - 서식지 보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기반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서식지 보호 강화 필요
- 우선복원종에 대한 복원성과 평가 및 멸종 위험도를 고려한 차기 우선복원종 선정 등 체계적인 복원 체계 마련 필요
 - ※ 절멸 위협(사향노루 등) 또는 절멸종(먹항새)을 대상으로 종복원 및 서식지 복원 동시 추진 등
- ☞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체계 강화, 과학 기반 보전·복원, 종+서식지 관리로의 확대, 국내·외 협력 강화 등 보전·복원체계 구축 추진

□ 세부과제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 강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를 위한 객관적 근거 강화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 및 목록 개정 반영('26)
 - * IUCN 적색목록 지침서를 참고하여 세부기준안 마련('26.7), 목록안 평가('26.12)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의 서식 정보 확보 및 지정·해제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유관기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확도 향상('26~)
 - * 국립생물자원관(철새), 국립공원공단(자연자원조사), 국립생태원(자연환경조사)
-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 등 제도 보완
 - 종별 보전에서 서식지 보전 체계로 전환 강화를 위해, 현행 종별 보호종 외에도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개정('26.上)
 - ※ (현행) 種만 지정 ⇒ (보완) 종+서식지 지정(특정지역에만 서식하여 해당 지역 훼손 시 절멸할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서식지 훼손 시 멸종 위험 급등 우려 등)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고, 양도·양수 방사·이식을 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인공증식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 강화
 -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의 유통을 금지하여 상업적 오용을 방지하도록 야생생물법 개정('26)
- 일원화된 멸종위기종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멸종위기종 전과정 관리 체계화
 - 멸종위기종 등급 및 적색목록 범주의 격차 중 재검토를 통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의 정합성 확보('26~)
 - 분과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주기적 복원·보전계획 이행점검 강화('26~)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과학기반 강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맞춤형 보전·복원 기술개발 및 효율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특성에 최적화된 증식 기술개발과 적용(지속)
 - 비침습적 탐지기술(eDNA, 드론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복원 개체의 생태적 적응 평가(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 유전적 다양성 관리
 - 복원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가계도, 혈통등록부 작성
 - ※ 여우('25년 378마리 작성 완료 → '30년 528마리(누계) /연간 30마리)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전적 고유성 및 다양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종 복원에 활용하기 위한 생체 시료 확보
 - ※ '25년 2,476건 → '30년 9,976건(누계) / 연간 1,000건 확보
- IUCN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사업 관리체계 도입 및 적용
 -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IUCN 녹색지위 평가체계(Green status of species) 도입 연구('26년)
 - * IUCN 가이드라인 번역·발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진단 체계 가이드북 개정 등
 - IUCN 녹색지위 평가체계를 적용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평가 시행('27년, 1종)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및 관리 개선

- 체계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연구(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정보와 서식지 분석으로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 특성과 잠재 서식지 발굴 및 검증
 - ※ 국립공원 내 사향노루, 안동시 먹황새 등의 서식 적합성 분석

- 멸종위기 야생생물 장기 모니터링으로 개체군, 서식지 및 위협요인 분석
※ 기후변화 취약종(산양) 대상으로 전국 단위 1단계('21~'25년) 모니터링 후 변화 관찰을 위한 2단계('26~'30년) 모니터링 추진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개선 및 관리

- 주요 위협요인(외래종, 질병, 로드킬 등)의 저감과 서식지 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기반 확보(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집단별 유전적 특성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체군 안정성 검토(지속)
-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내 생태계 단절지역(도로 등) 생태통로 조성으로 서식지 연결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인 백두대간 생태축 중심에 서식지 복원과 개선 지속 추진(지속)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국가보호종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관계 부처 합동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조사·연구·복원 협업 강화(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연 2회)으로 멸종위기종 조사·연구·복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유지(지속)
 -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5개 소속·산하기관간 멸종위기종 조사·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성과 공유
-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간 정기워크숍(연 1회) 등 협력체계 운영(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국제협력 확대 및 공동연구 추진(지속)

- 양자 및 다자 협력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및 국제 협약 이행력 제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 확보와 공동연구를 통해 복원 성과 증대 및 공유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서식지 보호에 사회적 참여 확대

- 멸종위기종 현황정보* 를 공개하여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26.5, 야생생물법 개정·시행), 멸종위기종 교육·홍보 및 지원 강화(지속)
 - *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연계 ESG 협력 강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연계한 ESG 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민간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참여 확대 및 자연자본 정보 공시 지원(지속)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함께하는 사회 문화 조성(지속)
 - ‘우리 마을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등 지역주민 참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 활성화로 공존문화 정착
 - ‘멸종위기 야생생물 공존협의체’ 정기 개최로 지역협의체 간 교류 및 멸종위기종 보전·복원 시민활동 확산 추진
 -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복원 대상 종과 사람 간 충돌 예방 및 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제도 마련 및 운영

2-3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 ◆ (목표) 국제적 멸종위기종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체계 강화
- ◆ (성과지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자관리체계 고도화(~'30년), 국제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원서식지 복귀 확대(~'30년)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관리 이행중
 -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은 '25.12 기준 총 40,920종
 - * 3년마다 열리는 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양도·양수 관리 등 법정 업무 수행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21년~), 유기동물 및 밀반입 물수 중 급증에 따라 보호대상종의 국외 이관 확대 필요
- 국내 이색반려동물 및 관상용식물 시장 확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유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필요
- ☞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고도화, 원서식지 복귀 체계화, 불법 유통 관리 등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추진

□ 세부과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고도화

-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문서 위·변조 검증 기능 추가 등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30)
- AI를 활용한 수출·입 서류 적정성 검토로 효율적 관리 강화('27~)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데이터 연계 결과 토대로 행정 효율 제고와 국민 불편 개선 추진(지속)
 - 관세청·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지속)
 - 불법 의심 거래 조기 탐색, 대응에 필요한 밀수·밀거래 발생 현황 등 기관 간 주요 데이터 연계 확대 추진
 - CITES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 간 허가·신고·검역·단속·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업사항 논의(매년 1회)
- * 기후부(CITES 관리당국), 국립생물자원관(CITES 과학당국), 유역·지방환경청(허가·신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검역), 관세청(세관 단속), 국립생태원(보호시설 운영) 등

2 **임시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원서식지 복귀 체계화**

- 임시보호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원서식지 복귀(국외 이관)를 위한 행정·검역·이송 절차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관리체계 마련(~'30년)
- CITES, IUCN, CB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26~)
 - 국제 컨퍼런스 참여로 국내 보호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현황 공유
 - 국제기구 산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원 프로젝트 참여
- 복귀 대상 개체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원서식지 기관과 종 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26~)
 - * 원서식지 복귀에 대한 역할 분담, 관련 절차,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교류 체계 등

3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불법유통 관리 강화**

-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국내 유통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유통 행위 감시 강화('26~)
-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협업을 위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민간단체 간 정례회의* 개최(매년, 연1회)
 - * 연간 불법유통 적발 및 방지 성과평가, 차년도 업무계획 공유, 협업사항 논의

- ◆ (목표)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 ◆ (성과지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추가 설립('24년 17개소 → '29년 19개소, 누적), 동물 찾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28년, 4차)

□ 현황 및 필요성

-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와 충돌·추락 등의 피해 실태조사 규정 마련('23.6~, 야생생물법 시행)
 - 규정 마련 이후, 실질적인 인공구조물(건축물·방음벽·수로 등) 개선 유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이행 관리 필요
-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정보시스템* 기반의 다발 구간 분석·조사, 원인 진단 및 저감방안 제시로 사고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 동물 찾길 사고 정보 수집과 취합 자료의 통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 ** 제1차 '20~'22, 제2차 '22~'24, 제3차 '25~'27 대책 수립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전문적인 치료·관리 역량 강화, 광범위한 관리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효율 제고 및 분원 확대 등 필요
-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방지, 동물 찾길 사고 관리, 구조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홍보·교육 등을 통한 야생동물 안전환경 조성 추진

□ 세부과제

①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방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실시(매년)
 -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조사자 교육 강화와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곳에 저감조치 요청 등 개선 유도('26~)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정·시행('25.10.24~)(건축물은 실태조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27년 시행)

- 「녹색건축 인증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개정 추진 등 민간 구조물의 야생생물 피해 예방조치 강화('26~)

②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저감 대책 마련

-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정보시스템의 사고 발생 정보 수집 기능 고도화 및 수집 자료의 통계화(도로 유형, 종, 시계열 분류 등) 추진('26~)
- 찾길 사고 신고 편의성 및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 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26~)
-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주의 표지판 설치 등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지속)
- AI 기반의 찾길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전국 적용 확대방안 마련('27)
- 제4차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28~'31) 수립으로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의 체계적 추진('27)

③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체계 마련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추가 설립('24년 17개소 → '29년 19개소, 누적)
 - 광범위한 관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분원 설치 추진('26~'27, 충남 구조관리센터 서산분원)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공통기능(구조·치료·재활) 및 특성화기능 강화와 종사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27년)
-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전문단체 연계로 구조관리센터 종사자 의무 교육 제도화 및 전문단체(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 운영('26~)
- 동물생태와 복지에 기반한 체계적인 진료체계 구성 및 진료데이터의 공공 활용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 구축('30년)

4]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야생동물 복지,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공존문화 조성, 생태계 보전 등 대중 교육 및 홍보 기능 강화(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
-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유희부지를 활용한 생태보전센터* 설립 추진('28~'30)
 - *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전과정 체험·전시시설 및 실내교육시설 구축·운영
- 야생동물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지속)
 - 공공기관·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정부 플랫폼(인재개발 플랫폼 등)을 통한 교육 실시
 - 국가, 지자체, 기업 협업을 통한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 제품 개발·보급 등 조류충돌 저감 실천 캠페인 추진

3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3-1

기후위기 대응 야생동물 질병 관리 다각화

- ◆ (목표)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안보를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다각화
- ◆ (성과지표) 기후변화를 고려한 신·변종 질병 위험성 분석('26~'29년) 및 관리 등급 지정(1~3급, '30년),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확대('25년 32개소 → '28년 40개소)

□ 현황 및 필요성

- 기후위기로 인해 질병 매개 곤충의 분포가 이동하고, 생태계 환경이 조정되는 등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여건 변화 전망
- 기후위기와 더불어 도시화로 인해 기존 야생 서식지에 서식하던 야생 동물, 사람, 반려동물의 활동 지역 중첩으로 질병 전파 위험 증가
- 수동 예찰, 능동 예찰, 생태 기반 통합 모니터링 등 다양한 건강성 예찰 체계의 전략적 구축 필요
- 병원체보다 '접점', '숙주' 중심의 위험관리 및 고병원성 AI의 중간 전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야생 포유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 야생동물 질병 유입 차단, 예찰·진단, 질병 발생 후 관리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안보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 다각화 추진

□ 세부과제

① 야생동물 질병 위험성 분석 및 국내유입 차단

- 기후변화를 고려한 야생동물 질병 위험성 분석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질병매개 곤충 이동 등을 고려하여 신·변종 질병 위험성 분석('26~'29), 관리 우선등급 지정(1~3급, ~'30)

- 정부·학계·산업계로 구성된 야생동물 관리위원회(長: 질병원장)를 통해 다학제(기후과학·생태학·수의학 등) 연구기반 마련('26~)

○ 야생동물 검역 강화를 통한 선제적 질병 차단

- 야생동물(과충류) 검역시행장 준공·운영(인천공항 인근, '26.3~)에 맞춰 '검역 고도화 방안 연구('26~'27)' 등을 통해 과학적 검역 시스템 마련

* 야생동물 주요질병 표준검사법 마련, 검역정보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등

2 기후연계형 야생동물 예찰 및 진단 체계 운영

○ 생태계 건강성 예찰·모니터링 체계 강화

- 이상기후(폭염, 한파, 폭우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예찰 지점 재설정 및 모니터링 강화('26~)
- 주요 질병인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을 중심으로 열화상 드론,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한 과학적 예찰 강화(지속)

○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술 개발 및 체계 고도화

- 전국 단위 신속대응을 위해 야생동물관리질병원의 권역별 분원 구축: 확대 수도권(인천 국립환경과학원 내), 신규 중부권(충청)
* 수도권 분원 확대(예산 65억)로 수도권 대응 및 해외 질병유입 차단 강화, 중부권 분원 신설(예산 128억)로 동·중부 권역 진단·대응 기능 특화(재정당국 협의에 따라 예산규모 변동 가능)
-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을 확대 운영('25년 32개소 → '27년 40개소)하고, 기후부(질병관리원)-질병 진단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계체계 구축('28)
* 수의과대학,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민간 기업·연구소 등
- 유전자 분석 기반의 신·변종 병원체 탐지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장형·자동화형(인공지능 활용) 진단장비 실증화('30)

- 기후변화 대응·첨단기술 활용 조기경보 체계 운영
 -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질병 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모델과 GIS를 활용한 야생동물 질병 위험지도 제작('26~'30)
 - 기후변화 데이터와 연계*하는 야생동물 질병 조기경보 체계 운영('30)
 - * 기후변화, 동물별 생태특성, 지형 및 식생, 해외질병 발생현황 등 반영

3 야생동물 질병대응 및 관리체계 고도화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 동물원, 야생동물 체험·전시시설 등 국민 접점 시설을 중심으로 인수공통감염 위험요인 파악 및 보고·관리체계 구축*('27)
 - * 동물원 내 야생동물 질병 발생 시 기후부(질병관리원)에 신고 의무규정 마련
 - 야생포유류* AI 예찰 및 시료(폐사체, 분변 등) 확보·분석 확대, 중간(조류→포유류) 전파경로 파악 등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28)
 - * (조사 대상종)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삥, 수달, 담비, 물범, 살쾡이 등
- One Health 기반 융합형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 야생동물 질병정보 시스템(질병원)과 관계기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민간(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통합관리('30)
 - * 감염병정보시스템(질병관리청), 가축방역정보시스템(농식품부), 수산생물방역시스템(해수부)
- 야생동물 질병 백신개발 및 보급·접종체계 구축
 - ASF 시험백신 임상실험을 위한 대규모 시범접종 실시('26, 베트남)
 - 야생생물 종별 백신 투여방법 지침 마련, 보급·접종체계 구축('29)

4 야생동물 질병연구 혁신 및 역량 강화

○ 야생동물 질병대응 R&D 기획·추진

- 기후변화 대응 야생동물·생태계 건강성 강화 R&D 기획·추진*('26~'34)

* ^{가칭}기후대응 생태분야 R&D 기획('26) → 사전기획점검(예타) 대응('27) → R&D 추진('28~'34)

- 범부처(복지부, 질병청, 농식품부 등) 감염병·방역 R&D* 참여 ('26~)

* 복지부·질병청 주관으로 8개 부처 참여(1기: '18~'22, 2기: '23~'27, 3기: 추진예정)

○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야생동물 질병관리 교육과정 개발·운영('27)

-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석·박사급)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운영(지속)

○ 국제 야생동물 대응 협력체계 확대

- 해외유입 질병 사전 감지를 위한 국외 감시망 운영(^{기존}몽골, ^{추가}일본 등)

- ◆ (목표) 생물안보 강화를 위한 유입 야생생물 보호·관리 확대
- ◆ (성과지표) 백색목록위원회 개최(연 1회), 백색목록 자료집 제작('27년), 야생동물 영업허가 관련자 대상 업무매뉴얼 배포('26년~)

□ 현황 및 필요성

- 메르스('15), 코로나19('20) 등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영업 등 전 과정 제도 개선('22.12.13, 야생생물법 개정, '25.12.14 시행)
- ☞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 강화 시행,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화 추진

□ 세부과제

①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도입

- 백색목록 도입으로 허가·신고 없이 유입됐던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 기존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법정관리종 외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하여 야생생물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태계 교란방지, 국민건강 보호 등이 확인된 종(백색목록)은 허용

《 야생동물 관리체계(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

기존 법정 관리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1. 멸종위기 야생동물 2. 국제적 멸종위기종, 3. 지자체 허가종 4. 유입주의생물, 5. 생태계교란생물 6. 해양보호생물, 7. 천연기념물 8. 가축, 9. 반려동물	백색목록 (888종)	백색목록 외 수입·유통·보관 금지 (연구·보호 등 공익 목적으로 지자체 허가 시 허용)

○ 야생동물 영업(수입·생산·판매·위탁) 허가제 도입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경우 '23.4부터 영업허가제 실시(농식품부)

-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은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영업자는 사육장 및 개체 관리,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

② 전 과정 관리제도 안착 지원

○ 제도 시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홍보(유튜버 협업 등), 안내서 배포, 영업장 점검 등을 통해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 야생동물 영업자 대상 야생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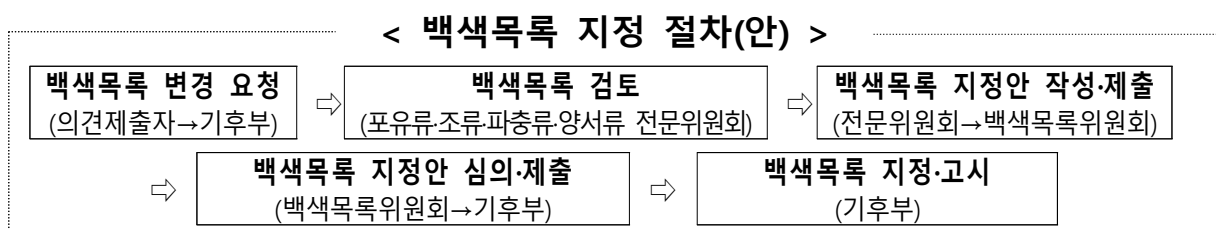
* 법정교육 3시간 LMS(Leaning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 개발

- 기후부·지자체 합동으로 영업장 점검*('26~)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중심 점검, 필요시 영업정지·허가취소

- 백색목록 자료집(학명, 구별법, 생태특성 등) 제작·배포('27)

○ 백색목록위원회(長: 국립생물자원관장)를 통한 백색목록 재검토('26~)



③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지자체 허가 및 신고 대상 야생생물(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야생동물) 민원 접수·처리 기능 개발('26~'30)

○ (협업)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제도 이해와 업무 교육 워크숍 개최('27~)

3-3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 관리 강화

- ◆ (목표)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 관리로 국가 생물안보 강화
- ◆ (성과지표)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25년 1,005종 → '30년 1,250종, 누적), 외래생물 판별 및 탐지기술 기술개발('25년 3종 → '30년 13종, 누적)

□ 현황 및 필요성

- 인간의 활동으로 전 세계에 37,000종 이상의 외래종 유입이 기록되었으며, 매년 약 200종의 새로운 외래종 추가 기록(IPBES '23)
- 외래종 증가는 질병 유입 및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여 고유종 생존을 위협하며 이는 생물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 유입주의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 추진 확대로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필요

* '21년 397종 → '22년 556종 → '23년 704종 → '24년 853종 → '25년 1,00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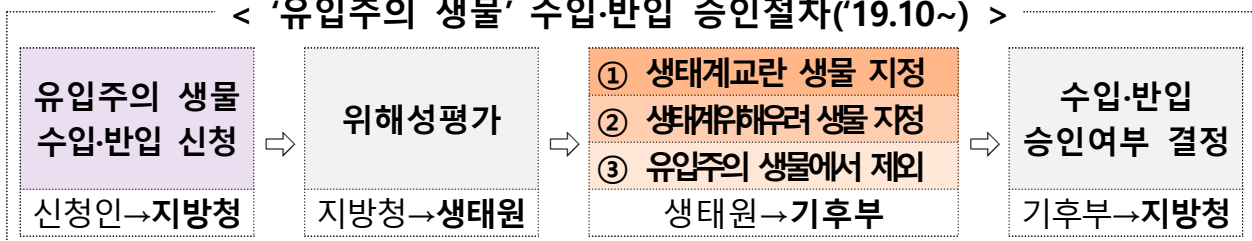
☞ 국내 유입 시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와 유입 후 관리 강화,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 생물안보 강화 추진

□ 세부과제

①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사전관리 강화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법정관리종)' 확대 지정('25년 기준 1,005종 → '30년 1,250종)

<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절차('19.10~) >



- 상시 예찰 및 합동조사 등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 확대
 - 붉은 불개미 등 비의도적인 유입 차단을 위한 기관별 국경지역 모니터링* ('26~)
 - * 농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내 발견지점 방제 및 정밀조사), 기후부(국경지역 밖 자연 생태계 조사총괄), 농진청(농경지), 지자체(주택가 등 관할구역) 등으로 역할 분담
 - 유입주의 생물 등 법정관리종의 불법수입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검사 지점 확대(인천공항세관본부 → 평택 등 주요 세관, '26~)

2 기유입된 외래생물의 관리 강화

- 외래생물 우선* 및 중점관리지역**의 정밀조사 등 모니터링 추진('26~)
 - *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유인도서 및 보호지역 등
 - **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이 용이한 온배수하천 및 호수공원 등
- 외래생물 법정 지정 확대 및 생태계 위해성평가 개선
 - 국내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한 법정관리 외래종(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생물) 지정종수 확대('27~)
 - 국내 기유입된 외래종의 정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위해 차별화된 평가요소 도입 등 위해성 평가표 개정('27)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관리 대상종 관리 강화
 - 국내 국소적으로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우선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방제(제거·퇴치) 추진('26~)
 - 지역별 우선관리 대상종 등 지역 맞춤형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및 모니터링 교육·컨설팅 등 제공 확대('26~)
 - 시민과학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추진

③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기반 구축

- 외래생물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대국민 외래생물 신고센터 및 신속대응팀 상시 운영, 고위험 외래생물 국내 출현 시, 범부처 합동(생태원·환경청·검역본부·지자체 등) 대응('26~)
- 외래생물 제거·퇴치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구축과 기술개발 확대
 -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종 목록 및 유입경로 등 파악을 위한 정보(분포 현황 및 유전자 정보 등) 구축 확대('26~)
 - 외래생물 형태, 유전자 등을 활용한 최신기술(eDNA 등) 적용 등 외래생물 판별 및 탐지기술 개발 확대('25년 3종 → '30년 13종, 누적)
 -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퇴치를 위한 기술개발(트랩 및 제거기술 등, '27)

④ 국내·외 외래생물 정보교류 확대

- 침입외래종 현황, 외래생물 제거 및 탐지기술 정보공유 등 주요 교역국 및 해외 기관 간 정보교류 강화('27)
- 외래생물 지역별 분포현황 정보 공유 등 온라인 소통 강화('26~'27)
- 외래생물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보급('26)

- ◆ (목표) LMO 안전관리 체계 개선으로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 ◆ (성과지표) 전국 자연생태계 LMO 유출 실태조사 대상지 확대('29년 1,250지역), LMO의 취급단계별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26년)

□ 현황 및 필요성

- 7개 부처(산업부(국가책임기관)·기후부*·과기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해수부·식약처)가 각 소관 LMO**의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등 안전관리중
 - * 기후부는 환경정화용(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환경복원에 사용되는) LMO의 소관부처이며 환경 방출 우려가 있는 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협의) 담당
 -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 포함 생물체
- 기후부 제4차 LMO 안전관리계획('23~'27) 수립·시행
- 자연생태계로의 LMO 유출* 지속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필요
 - * LMO 수입 물량('08년 8,572천톤 → '24년 10,922천톤), 누적 유출수('09년 19개체 → '24년 1,311개체)
- LMO의 개발과 상업적 이용 확산으로 인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자연생태계 유출 조사, 취급단계별 안전관리, 위해성평가·심사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LMO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생물안보 강화 추진

□ 세부과제

① 자연생태계 LMO 유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전국 자연생태계 LMO 유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지점 확대*
 - * ('25년) 1,150 → ('27년) 1,200 → ('29년) 1,250지점

- LMO 유출이 확인된 지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사후관리 강화(계속)

** 주관부처·지자체·전문가 연계 현장 대응 강화로 자연생태계 안전 확보

② LMO 취급단계별 안전관리 제도 수립

- LMO의 취급단계(수입·생산·이용 등)별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26)
- LMO 관련 시설(개발·수출입·유통·생산 등)의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훈련 체계 구축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26~'30*)

* ('26년) 교육·훈련 기본체계 구축 → ('28년) 교육·훈련 표준 매뉴얼 정립 → ('30년) 운영체계 현장적용 확대 및 고도화

③ LMO 위해성평가·심사 대응 역량 강화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물안보 강화를 위한 노출경로 기반 LMO 정밀 위해성평가* 체계 마련('26~'30**)

* ESL(Environmental Safety Level, 생태학적 안전 수준) 기반 평가모델 구축

** ('26년) ESL 기반 평가모델 구축 → ('28년) ESL 등급별 차등적 위해성평가 기준 정립 및 적용범위 확대 → ('30년) ESL 기반 LMO 위해성평가 절차·기준 표준화

-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Gene Editing) 등 최신 바이오신기술 관련 전문가 풀 확대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한 위해성심사 기준 개선
 - 바이오신기술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26)
 - 기술 유형별 맞춤형 위해성심사 세부 기준 확립('30)

- ◆ (목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저감과 안정적 관리로 인간·동물 공존기반 강화
- ◆ (성과지표) 유해야생동물관리시스템(DB) 통합 및 구축(~'30년), 도심 출몰 야생동물 관리방안 마련('26년)

□ 현황 및 필요성

- 인간 활동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가 증가하며 재산(농작물, 인명 등) 및 생태계 교란 발생 우려 증대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포획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실시
 - 까치, 까마귀류, 멧돼지, 집비둘기,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 19종('25.12 기준) 지정 및 관리 대상 확대중*
 - * '50년대부터 사육용으로 일본·대만에서 수입, 유기·방치되어 농작물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꽃사슴(외래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25.12)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별 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지방정부 협업 기반의 유해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포획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등 포획 관리 체계화 필요
- ☞ 유해야생동물 현황 조사, 지정·관리 체계화, 피해 예방 지원, 수렵장 및 포획 안전관리로 인간·동물의 공존기반 강화 추진

□ 세부과제

① 유해야생동물 현황 조사 및 피해 발생 자료 수집 강화

- 드론, 동체 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멧돼지 개체 자동 인식 및 관리 기법 개발 등('26~)

- 전문가와 실태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유해야생동물 특성(밀도·개체수 등) 및 피해 현황 정기 조사('26~)
- 포획 신고, 전문가 조사, 피해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유해야생동물관리시스템(DB)' 구축 추진('30년)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간 '유해야생동물관리시스템(DB)'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및 자료 공유 협력 추진('26~)

[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개선

- 피해예방시설 설치 효과 증대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운용 효율성 제고('26~)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외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26~)
- 농작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상시 운영(지속)

[3]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관리 강화

- 재산 및 생활환경 피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목록화(~'30년)
- 지자체별로 야생동물 피해 상황, 유형 등 특징을 고려하여 피해 저감 방안(지원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세부 사항 규정('26~)
- 도심지 출몰 야생동물 관리방안 마련
 - 도심 내 야생동물 갈등·피해* 현장 조사 및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 관리방안 마련('26)

* (오소리) '24~'25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서 오소리가 시민을 공격하여 뇌진탕, 교상, 찰과상을 입는 피해사례 발생(13명 피해), 하남시 오소리 실태조사 추진('25)

(큰부리까마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번식기(5~7월)에 큰부리까마귀가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 다수 발생(행동요령 안내 보도자료 배포, '25.6.25)

○ 도시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연구

- 갈등 빈도가 높은 종의 도시 생태 특성, 첨단기술을 이용한 도심
출몰 멧돼지 관리 연구
- 도시 포유류 서식현황 조사를 통한 도시공간 이용 정보 구축('26~'30),
종별 공존 방안 제안('28~)
- 북한산 일대 도심출몰 멧돼지 대응 드론·CCTV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 시범·운영('26) 및 지자체 활용 지원('27~)

4 수렵장 설치·운영 개선

-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별·지역별 서식밀도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가능량 산정 및 적용('26~)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활동 수렵건의
수렵장 출입 제한 등 조치 강화('26~)
- 수렵장 출입 인원, 수렵 제한구역, 수렵도구 중 석궁·활(도르레 달린
석궁·활 제외) 등 제한 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26~)
- * 총기와 달리 규제가 없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도르레가 달린 활을 포획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5.10)

5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관리 및 사후처리 점검 강화

- 수렵 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총기) 안전교육 실시,
미 이수자는 포획 활동 제한('26~)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매몰, 소각,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 이행
여부 점검 및 처리 방안 개선('26~)

4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개선

4-1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 및 시설 개선

- ◆ (목표)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 정비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
- ◆ (성과지표)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및 가치 증진을 위한 민간참여 규정 마련('26), 동물원 허가제 본격 실시로 동물복지 강화('28)

□ 현황 및 필요성

- 생물다양성 감소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인한 동물원* 전시동물 및 사육곰** 등 제도 강화에 따른 이행 관리 필요

* 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 동물원 관리체계를 강화한 「동물원수족관법」 '23.12월 시행 (법 개정 전 등록된 동물원은 '28.12까지 허가 유예)

** 곰 사육 금지 법제화에 따라 '26.1부터 농가 곰 사육 금지 「야생생물법」 시행

- 전시동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불법 수출·입 관리 강화, 개인 사육 증가 등에 따라 유기·방치·몰수되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 필요

* 국가시설 현황 : ① CITES 보호시설('21.6~), ②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24.4~)

☞ 민간 참여 확대, 사육곰 및 동물원 등 동물복지 강화, 유기·방치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으로 정책기반 강화 추진

< 국가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요(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內 위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보호시설 - (목적) 유기·방치 혹은 밀반입 과정에서의 몰수 CITES종 보호 - (법적근거) 야생생물법 제17조제3항* * 몰수종의 수출국·원산국 반송 및 보호시설 이송 등 - (개소) '21.6 - (시설규모) 국립생태원 부지 내 2,1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 (목적) CITES 외 유기·방치 외래종 등 보호 - (법적근거) 야생생물법 제8조의3*, 4** * 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 (개소) '24.4 - (시설규모) 국립생태원 부지 내 1,061㎡ |
|---|---|

□ 세부과제

① 민간 참여와 자연환경정책 제도 연계 강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국가생태경제도시) 제도 도입 방안 마련('26~)
 - * 특정 지역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산의 유지·관리 등 토지 관리방법을 지불내용으로 하는 계약
-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및 생태계 가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26)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도입, 민간의 복원사업 참여 및 실적인정, 지원센터 지정 등 검토
- 자연자본공시(TNFD*) 관련 영향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25~'27년), 시범 보고서 제작·배포 및 가이드라인 마련('26년)
 - *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연 관련 리스크·기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무 영향을 고려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재무공시

② 사육곰 및 동물원 관리 등 동물복지 제도 강화

- 곰 사육 금지 시행('26.1~)에 따라 사육 포기, 몰수 개체 관리를 위한 안정적 보호 인프라 확보 및 국내외 협력 강화('26~)
 - 공영 시설을 지속 조성·운영*하고, 민영 생추어리·동물원 등 민간 시설 조성·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보호 인프라 확보
 - * (국가) 서천 보호시설 추가 개소, (지자체) 구례 보호시설('25.9~) 지속 운영
- 공영동물원(지자체), 해외 생추어리 등과의 협력 통해 분산 보호 추진

- 동물원 허가제* 전면 적용('28.12)을 통한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공영동물원** 역할 강화('26~)

* 동물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 등 구체적 요건 충족시 동물원 운영 가능

** 우수 공영동물원을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 수용·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보전 집중 추진

③ 국내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확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26~)
 - 보호 대상 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현 시설의 수용한계에 따라, 수용 능력 확충 및 종별 특성에 맞춘 증장기 확대 추진
 - 전국 주요 권역별 거점 동물원, 생물자원보호시설 등 보호시설 간 연계로 권역별 분산 관리체계 마련
- 장기 보호시설 특성에 맞춘 시설기능(보호→복지) 전환 추진('26~)
 - 장기 보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단순 보호 중심에서 사육공간 확대, 행동 풍부화, 사회화 등 동물복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 수의·행동관리 전문인력 배치, 적정 밀도 사육을 위한 복지형 시설 개선,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 등 도입

- ◆ (목표) 야생생물 보호 협력과 교육·홍보로 인간-야생동물 공존 인식 확산
- ◆ (성과지표)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정기 개최(2회/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섬생물탐사단 운영(2회/연)

□ 현황 및 필요성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등 부처간 협력 체계 운영으로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협력 추진 중
- 기후변화, 서식지 교란 및 단절, 환경오염 등 생물다양성 감소 이슈로 야생생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KM-GBF 등 국제적 목표의 국내 정책 연계를 위해 부처간 협의체 등 협력체계 활성화 및 하위정책 실행력 제고 필요
- 국민의식 향상에 따른 환경·생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공공 기관의 환경·생태 교육 개발 및 국민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 국내·외 협력 및 교육·홍보 강화로 민·관 전체의 인간-야생동물 공존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야생생물 보호 정책의 추진력 확보

□ 세부과제

① 생물다양성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협의체 정기 참여를 통한 KM-GBF 이행 점검 및 정책 연계(지속)
 -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부속회의에 참여하여 각 당사국별 KM-GBF 이행 사항 공유 및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확대

- 국내 여건을 고려한 국제 협약 이행 동향 분석을 통해 관계부처에 정책 연계 방안을 제공하고, 야생생물 보호 실행력 제고
- 한·중·일 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침입외래종 제거 등 연구기관·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포럼·심포지움으로 협력사업 발굴
-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IUCN SSC CPSG* 등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종 보전계획 수립 및 보전 기법(PVA, PHVA** 등)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26년~ 연 1회)
 - * IUCN SSC Conservation Planning Specialist Group(CPSG):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종보전계획 수립과 보전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 ** PVA(Population Viability Analysis; 개체군 생존분석), PHVA(Population Habitat Viability Analysis; 개체군 서식지 생존분석)
 -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협력 성과를 분석하여 국내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전문역량 강화 및 자립적 수행체계 정착 도모('26~)

2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한 국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업무 공유와 주요 정책 협의(지속)
- '국가보호종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로 각 부처별 보호종에 대한 보전 및 복원계획 공유와 협력 활성화(연간 2회) 방안 모색(지속)
- 백색목록 및 영업허가 제도 신규 시행('25.12.)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26~)
 - ※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제도 교육 실시 및 업무 가이드라인 제공('25년 하반기)
-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기후부(유역·지방환경청)·경찰청·지자체·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 및 민·관 협력 강화(지속)

- 매년 관계기관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 단속 추진
- 지자체·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불법엽구(올무 등) 수거 활동 전개
- 포상제도와 주민참여 신고 활성화 홍보*를 통한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 * 일반신고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우편, 인터넷을 통한 밀렵 신고의 절차와 방법 홍보
(신문 등 언론매체 광고, 홍보용 리플릿 배포 등 활용)
- 혹한기, 폭설에 대비한 유역·지방환경청, 공공기관, 지자체의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및 서식지 보전 활동 지속 추진

③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확대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공동 교육·홍보 강화
 - 유관기관* 간 콘텐츠 공유와 기관별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교육 실시('27년)
 -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 기관별 운영 홍보채널에 대한 공동 홍보 및 연계로 체계적 홍보 수행, 대국민 소통 강화('26~)
 - 유관기관 간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등의 공통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26~)
- 야생생물, 환경,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개발 및 추진
 - 한반도 및 세계 야생생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교재·교구를 개발·보급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26~)
 - 생물다양성, 야생생물 대상 생태감수성 교육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등 지자체 교육 인프라 강화('26~)
 -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환경단체·학교 등 수요에 맞게 활용 가능하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교육 영상 제작('26~)

○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와 홍보 강화

- 전문가와 시민과학자가 함께 종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을 실시하는 '섬*생물 탐사단' 운영으로 시민 인식 제고 및 생태계 데이터 확보(매년, 2회/연)

* 보전 가치가 높은 종(멸종위기종·고유종 등)의 서식여부, 생물다양성 정도, 기후 등 환경변화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지역(섬) 선정

- 로드킬, 유리창 충돌, 서식지 감소 등 야생생물의 위기상황 공유와 인간-야생동물 공존에 대한 특별전시 개최('26)
- 다양한 채널(TV·라디오 등 대중매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을 활용한 소통형 콘텐츠 제작·배포(지속)

V. 부록

1 세부 추진과제별 관계부처 및 소관기관

세부 추진 과제	관계부처	기후부 내 소관기관
①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1-1. 기후위기 취약 야생생물 보호 기반 강화	기후부, 산림청, 기상청	기후부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1-2.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복원체계 강화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기후부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1-3.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후부 자연생태정책과, 국립생태원
② 야생생물 보호와 복원		
2-1. 야생생물 조사 개선 및 활용	기후부	기후부 자연생태정책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2-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강화	기후부, 해수부, 국가유산청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2-3.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기후부, 농림부, 관세청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2-4. 야생동물 사고 예방과 구조·치료체계 강화	기후부, 국토부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③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3-1. 기후위기 대응 야생동물 질병 관리 다각화	기후부, 복지부, 질병청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3-2.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이행 강화	기후부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3-3.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 관리 강화	기후부, 농림부, 해수부, 관세청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태원
3-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강화	기후부, 산업부,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태원
3-5.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기후부, 농림부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④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개선		
4-1.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 및 시설 개선	기후부, 농림부	기후부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4-2. 야생생물 보호 협력 및 인식 확산	기후부, 외교부, 농림부, 해수부, 국가유산청	기후부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2 세부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 관련 예산사업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조정 예정

세부과제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총계	165,459	163,404	169,287	187,150	169,282	854,582
Ⅰ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89,496	83,869	85,066	86,041	86,121	430,593
1-1. 기후위기 취약 야생생물 보호 기반 강화	2,599	2,709	2,849	2,779	2,859	13,795
○ 기후변화의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영향 모니터링	1,017	1,087	1,177	1,277	1,387	5,945
○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기반 강화	232	232	232	232	132	1,060
○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보호·대응 기반 마련	1,350	1,390	1,440	1,270	1,340	6,790
1-2.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복원 체계 강화	44,195	44,622	45,679	46,724	46,724	227,944
○ CBD KM-GBF 2030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2,910	2,806	2,806	2,806	2,806	14,134
○ 보호지역 후속 관리 강화로 국토 환경가치 제고	36,681	37,212	38,269	39,314	39,314	190,790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 서식지 보전 강화	4,604	4,604	4,604	4,604	4,604	23,020
1-3.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42,702	36,538	36,538	36,538	36,538	188,854
○ 백두대간지역(정맥·기맥 등) 핵심 생태축 보전 및 복원	900	900	900	900	900	4,500
○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	500	600	600	600	600	2,900
○ 생태통로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강화	8,778	6,201	6,201	6,201	6,201	33,582
○ 도시 생태공간 조성 등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32,524	28,837	28,837	28,837	28,837	147,872

세부과제	연차별투자계획(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② 야생생물 보호와 보전·복원	40,680	42,291	45,366	47,541	46,421	222,297
2-1. 야생생물 조사 개선 및 활용	29,296	29,811	31,986	32,161	30,441	153,695
○ 야생생물 조사·연구 지속 추진	19,198	18,223	18,463	18,753	19,093	93,730
○ 야생생물 조사 연계성 강화 및 활용 확대	8,800	10,290	12,225	12,110	10,050	53,475
○ 야생생물 조사 신기술 도입과 고도화	1,198	1,198	1,198	1,198	1,198	5,990
○ 야생생물 조사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	100	100	100	100	100	500
2-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강화	5,428	6,628	6,628	6,628	6,628	31,940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 강화	1,309	1,109	1,109	1,109	1,109	5,745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과학기반 강화	0	1,400	1,400	1,400	1,400	5,600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및 관리 개선	1,585	1,585	1,585	1,585	1,585	7,925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1,885	1,885	1,885	1,885	1,885	9,425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서식지 보호에 사회적 참여 확대	649	649	649	649	649	3,245
2-3.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614	610	610	610	610	3,05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자관리체계 고도화	223	219	219	219	219	1,097
○ 임시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원서식지 복귀 체계화	391	391	391	391	391	1,955
○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불법유통 관리 강화	0	0	0	0	0	0
2-4. 야생동물 사고 예방과 구조·치료체계 강화	5,342	5,242	6,142	8,142	8,742	33,610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방지	150	150	150	150	150	750

세부과제	연차별투자계획(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저감 대책 마련	400	300	200	200	200	1,300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체계 마련	4,792	4,792	4,792	4,792	4,792	23,960
○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0	0	1,000	3,000	3,600	7,600
③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26,935	29,506	31,245	46,286	29,586	163,556
3-1. 기후위기 대응 야생동물 질병 관리 다각화	13,624	16,362	18,101	33,142	16,442	97,671
○ 야생동물 질병 위험성 분석 및 국내유입 차단	3,139	5,113	5,127	5,141	5,141	23,661
○ 기후연계형 야생동물 예찰 및 진단 체계 운영	3,790	4,218	6,234	21,250	4,550	40,042
○ 야생동물 질병대응 및 관리체계 고도화	4,092	4,818	4,950	4,950	4,950	23,760
○ 야생동물 질병연구 혁신 및 역량 강화	2,603	2,213	1,790	1,801	1,801	10,208
3-2.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이행 강화	423	419	419	419	419	2,097
○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도입	0	0	0	0	0	0
○ 전 과정 관리제도 안착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223	219	219	219	219	1,097
3-3.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 관리 강화	2,844	2,881	2,881	2,881	2,881	14,368
○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사전관리 강화	598	600	600	600	600	2,998
○ 기유입된 외래생물의 관리 강화	1,829	1,829	1,829	1,829	1,829	9,145
○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기반 구축	325	360	360	360	360	1,765
○ 국내·외 외래생물 정보교류 확대	92	92	92	92	92	460

세부과제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3-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 관리 강화	1,106	1,106	1,106	1,106	1,106	5,530
○ 자연생태계 LMO 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440	440	440	440	440	2,200
○ LMO 취급단계별 안전 관리 제도 수립	536	536	536	536	536	2,680
○ LMO 위해성평가·심사 대응 역량 강화	130	130	130	130	130	650
3-5.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8,938	8,738	8,738	8,738	8,738	43,890
○ 유해야생동물 현황 조사 및 피해 발생 자료 수집 강화	1,858	1,858	1,858	1,858	1,858	9,290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개선	5,950	5,950	5,950	5,950	5,950	29,750
○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관리 강화	510	310	310	310	310	1,750
○ 수렵장 설치·운영 개선	310	310	310	310	310	1,550
○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관리 및 사후처리 점검 강화	310	310	310	310	310	1,550
④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개선	8,348	7,739	7,611	7,283	7,155	38,136
4-1.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 및 시설 개선	7,638	6,887	6,737	6,587	6,437	34,286
○ 민간 참여와 자연환경정책 제도 연계 강화	771	910	910	910	910	4,411
○ 사육곰 및 동물원 관리 등 동물복지 제도 강화	4,476	5,586	5,436	5,286	5,136	25,920
○ 국내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확대	2,391	391	391	391	391	3,955
4-2. 야생생물 보호 협력 및 인식 확산	710	852	874	696	718	3,850
○ 생물다양성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370	370	370	370	370	1,850
○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한 국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70	100	100	0	0	270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확대	270	382	404	326	348	1,730